

이사회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스퀘어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기능)

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4조 (경영철학의 실행)

- ①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(이하 "회사경영철학"이라 한다)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.
- ② 이사회는 회사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'SK'의 기업문화가 유지,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.
- 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,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, 실행한다.

제5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,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

제6조 (이사회 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에 일시, 장소, 회의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부의사항)

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
2. 재무제표의 사전승인
3. 신주발행 사항에 관한 결정
4.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
5. 준비금의 자본전입
6. 대표이사,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7. 지점의 설치, 이전, 폐지
8. 기업지배구조헌장, 이사회규정, 위원회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9. 건당 자기자본(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개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를 의미하며, 이하 본 조 및 제9조에서 동일함) 1.5% 이상의 출자 및 합작
10.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의 자산 취득(시설 투자)
11.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의 보증
1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<개정 2023. 11. 29.>
13. <삭제 2023. 11. 29.>
14. 회사 경영철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실천방법 개발, 정립 및 수정
15. 10억원 이상의 기부. 단,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”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다.
16. 이사에 대한 이사 개인별 보수액 <개정 2026. 3. 25.>
17.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 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제9조 (사후 보고사항)

대표이사는 매분기에 발생하는 다음 사항을 다음 분기에 첫 번째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분기 첫 번째 이사회에 보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.<개정 2024. 9. 26.>

1. 상반기 결산
2. 건당 자기자본 1.5% 미만의 출자 및 합작
3. 건당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.5% 미만의 자산 취득(시설 투자)
4. 건당 자기자본 1.5% 미만의 보증관련 사안
5.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의 고정자산 처분
6. 비업무용 고정자산 취득
7. 이사회 사전승인 대상 외의 내부거래
8. 전사 핵심성과지표(KPI) 및 KPI 성과 평가
9.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이사 요청사항

제10조 (의결)

-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의장은 이사회에서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고,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 단,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

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(외부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)

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대표이사 유고시 처리)

- ①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주주총회 의장 대행자가 된다.
- ②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거, 대표이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정한 사내이사로 하되,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내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내이사를 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로 하되,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된다. <신설 2024. 9. 26.>

제13조 (의사록)

이사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감사위원회

2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<개정 2026. 3. 25.>

3. 인사보상위원회

4. 미래전략위원회 <개정 2025. 3. 27.>

5. ESG위원회

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26. 3. 25.>

제15조 (실비지급)

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

부 칙(2021. 11. 25.)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1. 29.)

이 규정은 2024. 1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 9. 26.)

이 규정은 2024. 9. 27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3. 27.)

이 규정은 2025. 3. 28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3. 25.)

이 규정은 2026. 3. 25.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 제1항 제2호는 2026. 7. 23.부터 시행하며, 제14조 제3항의 “독립이사” 용어 변경은 2026. 7. 23.부터 적용한다.